

##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 1998-129호 1998. 4. 1

### 주요 골자

#### 가.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 주택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과거 투기방지과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던 재당첨 제한기간, 1순위 자격제한 등의 청약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수도권 전입자에 대한 2년간의 주택청약제한을 폐지하고, 기당첨자 및 1주택소유자도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수도권 지역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국민주택 등은 10년에서 5년으로,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분양가가 자율화된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을 폐지함.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의 2순위 발생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나.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수도권의 지역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율이 1.89%에 불과한 점을 감안,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의 지역에서 청약할 수 없도록 하여 수도권의 지역의 분양일정을 단축하고
-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도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함.

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할 경우 입주자는 잔금을 완납하고도 재산을 행할 수 없으므로 잔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용검사시 납부하도록 하고
- 주택업체 2인 이상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주체 도산시 연대보증 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입주예정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대보증 요건을 강화함.

라.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가 가능하도록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공등의 공공사업자도 민간 주택사업자처럼 공공 임대 주택의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개 정 이 유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일정을 단축하여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히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주택업체의 도산 및 공사지연으로 발생하는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p>	
<p>1-9 (생략)</p>	<p>1-9 (현행과 같음)</p>	
<p>10.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p>	<p>10. ----- ----- -----주택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가 법 제44조제3항의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주택 건설사업을 신탁받아 조합의 구성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p>	<p>· 신탁회사가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p>
<p>11. (생략)</p>	<p>11. (현행과 같음)</p>	
<p>12. &lt;신설&gt;</p>	<p>12.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 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수도권신공항 배후 지원단지내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p>	<p>·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 단지내의 주택을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근거 마련</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p>	<p>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① - ② (생략)</p> <p>③ 서울 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급 대상으로 본다.</p> <p>④ 수도권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자는 전입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도권에서 청약저축·청약예금 또는 청약저축·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1조 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취학·질병요양·근무지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와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결혼하여 수도</p>	<p>③ ----- ----- ----- -----수도권내의----- ----- ----- -----</p> <p>④ &lt;삭제&gt;</p>	<p>· 수도권의 지역에서 청약율이 미미한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폐지함으로써 청약일정을 단축하여 주택업체의 조기 자금조성이 가능토록 함.</p> <p>·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시 청약자격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수요를 확대하고 거주 이전의 지역간 형평성 확보</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권의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결혼하여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 ⑦ (생략)</p> <p>제7조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p> <p>① 사업주체(영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영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p> <p>① 사업주체(영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고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p>	<p>· 분양된 주택이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제3자의 채권자에 의해 저당권 등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탁법에 의해 토지를 신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을 것.</p> <p>2.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할 것.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체가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에 달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별표1의 기준공정 제2호 자목·차목·타목·파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지 처분기</p>	<p>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별표1의 기준중 제2호 자목·차목·타목·파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1의 기준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한 경우 건축공정이 별표2의 기준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p>	<p>·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사업주체가 도산한 경우 입주자 보호 강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간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사업주체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용자 또는 부지매입 보증을 받기 위하여 당해 대지에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으나 주택사업공제조합으</p>	<p>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③ ----- -----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사업자금의 용자 또는 보증을 받으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p>	<p>· 사업주체가 조합의 용자 또는 보증을 받으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만 입주자 모집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보호 강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로부터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 보증을 받은 경우.</p> <p>3.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등의 권리자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후에는 저당권등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이의없이 말소한다는 약정서를 저당권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하거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경우</p> <p>④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lt;삭제&gt;</p> <p>④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 사업부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사업이 불가피하여 입주자 피해 발생</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3.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 이후에는 당해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사업주체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경우</p>	<p>3. &lt;삭제&gt;</p>	<p>·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후 토지대금 미납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시 소유권 이전 및 사용검사 지연으로 입주자 피해가 초래됨.</p>
<p>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착공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에 달한 때에는 영 제34조</p>	<p>⑤ ----- ----- ----- ----- -----한다.</p>	<p>· 주택착공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확인서를 시장 또는 군수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p> <p>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15. (생략)</p> <p>⑤ - ⑨ (생략)</p> <p>제9조 (주택의 공급 신청)</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5일----- ----- ----- ----- ----- ----- ----- ----- ----- ----- ----- ----- ----- ----- ----- ----- ----- -----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⑤ - ⑨ (생략)</p> <p>제9조 (주택의 공급 신청)</p>	<p>· 입주자 모집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업체의 조기 자금조성이 가능토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가. 기당침자의 경우</p> <p>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p> <p>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5제곱미터(1991년 4월 5일 이전에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자는 135제곱미터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p> <p>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5제곱미터(1991년 4월 5일 이전에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자는 165제곱미터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단</p>	<p>있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p> <p>-----</p> <p>가. &lt;삭제&gt;</p> <p>나. &lt;삭제&gt;</p> <p>다. &lt;삭제&gt;</p> <p>라. &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독 주택인 경우. 이 경우 면적산정에 있어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하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거면적이 105제곱미터(1991년 4월 5일 이전에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자는 165제곱미터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p>	<p>2. ----- -----6개월----- ----- ----- ----- -----</p>	<p>· 민영주택의 2순위 발생 기간을 단축하여 수요확대 및 미분양 적체 현상 해소</p>
<p>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주택의 범위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속하는 수도권·광역시 또는 도와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한다.</p>	<p>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 ----- ----- ----- ----- -----</p>	<p>· 제1항제1호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리</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규정에 의한 경쟁 과열구역 이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 역을 제외한다)에서 공급하 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p>	
<p>1. 국민주택등의 당첨자와 그 배우자중 당첨일로부 터 과거 10년이내에 1회 이상 다른 주택 또는 단 독주택 건설 용지의 당 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 된 자</p>	<p>1. ----- ----- -----5년----- ----- ----- ----- -----</p>	
<p>2. 민영주택의 당첨자와 그 배우자중 당첨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1회 이 상, 다른 주택 또는 단독 주택건설용지의 당첨자 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p>	<p>2. 국가·지방자치단체·한 국토지개발공사·대한 주택공사·지방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 ----- -----5년----- ----- ----- -----</p>	<p>· 국민주택 분양시 기당첨자 의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미분양 적체 해소</p>
<p>② - ③</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② (생략) ③ 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 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p>	<p>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 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p>	<p>· 공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 원 중단에 따른 공공 사업</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을 수 없다.</p> <p>④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시에 받으며,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받고, 중도금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달한 때에,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되, 최초의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다.</p> <p>1. --2 (생략)</p> <p>⑤ - ⑥ (생략)</p> <p>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p>	<p>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p> <p>④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시에 받으며,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경우 잔금의 50퍼센트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고-----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p>	<p>자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건설확대가 가능토록 함</p> <p>· 임시사용승인에 의한 입주 시 입주자는 잔금을 지불하고도 사용 검사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 발생</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① (생략)</p> <p>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p> <p>③ - ⑤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5호 에 해당하는 자-----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부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적용례)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2순위인 북한이탈주민을 1순위로 상향 조정하여 입주가 용이하도록 함.</p>

〈 현 행 〉

【 별 표 】

## 건축기준공정표(제7조관련)

### 1.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구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사의 진척내용	
		아파트의 경우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10% 이상	전체 층수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 이상이 완성된 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20% 이상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 2.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공정	공사의 진척내용
20%	아파트의 경우 : 전체 층수의 1/2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 개정 안 〉

【별 표 1】

건축기준공정표(제7조관련)

1.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구분	공사의 진척내용	
	아파트의 경우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전체 층수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 이상이 완성된 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구분	공사의 진척내용
아 파 트	전체 층수의 1/2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연립 및 단독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별 표 2】

## 건축기준공정표(제7조관련)

### 1.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구분	공사의 진척내용	
	아파트의 경우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 이상이 완성된 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전체 층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 2.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구분	공사의 진척내용
아 파 트	전체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연립 및 단독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주택회보